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안 번호	110
----------	-----

□ 제안이유

- 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목포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신축성 있는 조례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칭 변경
“목포시지방공사목포의료원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목포시지방공사사장후보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로 변경
- 기관별 사장후보추천 위원수 변경(안 제3조)
자치단체 2인, 의회 2인, 이사회 2인, 감사 1인 → 자치단체 2인, 의회 2인, 이사회 3인
-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의 자격 적격자와 제한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
 - 적격자 :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공인회계사, 당해 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제한 : 공사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 시의회의원
- 위원회의 존속기한 명시 : 사장임명시까지(안 제5조)
- 사장후보 복수 추천(안 제8조)
 - 사장후보 대상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 추천
- 위원회의 사장후보 모집·조사 등 전문기관 의뢰 조항 신설(안 제8조)

- 회의참석위원회에 대한 수당 및 여비지급 근거 마련(안 제10조)
- 시행규칙 근거마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목포시의료원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한정된 조례를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목포시에서 설립 운영하는 공사·공단의 사장 후보 추천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2002. 3. 25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제58조 제4항)과 2002. 6. 19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의 개정(제56조의 2 및 제56조의 3)에 따라 2002. 6. 14 행정자치부로부터 이첩된 지방공사·공단 사장 추천 설치운영 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안으로써 특별한 문제점 없음.
- 다만,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이 규정된 안 제3조 제2항 제5호 “당해 공사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된 자” 와 사장 후보를 규정한 제8조 제1항중 “당해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에서 당해 공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폭넓은 인재의 등용에 다소 제약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조례 표준안과 같이 “당해 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지식)보다는 “공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지식)에 관한 규정으로 검토한다면 보다 폭넓은 인재등용의 문을 넓힐 것으로 보임.